

홍보운영위원회규정^[제목 개정 2021.4.30.]

제정 2006. 4.16.

개정 2020. 9.24.

개정 2021. 4.30.

제1장 명 칭

제1조 본 규정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 정관 제46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대외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라 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2장 목 적

제2조 본 위원회는 ① 협회 회원사의 가입 확대 및 관리 ② 골프계 현안 문제의 연구·해소 ③ 건전한 골프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통해 한국 골프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장 구 성

제3조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4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 1명은 회장이 협회 상근부회장 또는 처장 중에서 지명한다. <개정 2020. 9.24.>

제5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 처리한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.

제4장 회 의

제6조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7조 ①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5장 업 무

제8조 위원회는 제2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행한다.

1. 회원사 가입 확대 사업, 회원사 관리
2. 골프계 전반 현안 문제 연구, 해소
3. 건전한 골프 문화 홍보 사업

제9조 전 조 사업을 수행키 위한 세칙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06. 4.16.>

제10조 본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 본 규정은 서기 200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9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4.30.>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